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1. 10. 15.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영교

### 1. 제안요지

- 가. 의안번호: 제1647호
- 나. 제 출 자: 성동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 10. 1.
- 가. 회부일자: 2021. 10. 6.

### 2. 제안이유

마장축산물시장 및 주변 일대의 축산물가공업체, 유지류 등 배출업체 및 수거·운반업체에서 이뤄지는 작업 과정(배출·보관·수집·운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악취를 저감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및 배출업체 등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조례의 적용대상, 부서별 업무 및 기능(안 제5조~제7조)
- 라.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1조)

마. 청결유지 및 안전조치(안 제12조)

바.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  
(안 제13조~안 제16조)

사. 공제조합의 설립,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안 제17조~안 제18조)

아. 무게측정 시설의 설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안 제20조~안 제22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15.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검토의견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에서 이뤄지는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시장 주변 청결 유지 및 미관 개선을 통해 상인과 주민이 상생하는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제출된 것으로 23 개의 조문으로 구성됨

나. 조문별 검토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 구청장 및 배출업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 조례의 적용대상,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에서는
  - 청결유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 유지류 등의 배출 및 수집운반, 배출용 봉투 제작 및 사용에 관해
-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 공제조합의 설립,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에 대해
- 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는
  - 무게측정 시설의 설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마장축산물시장의 축산물, 부산물, 유지류 등 1일 발생 및 처리량이 약 300톤에 달하고 각종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해 인접한 학교, 학부모, 주민들로부터 교육환경과 생활환경 저해 문제로 민원이 상시 발생하는 지역임

○ 주요 사항으로 동물성 유지, 부산물 등이 처리차량 내 상온에서 노출된 상태로 장시간 체류하여 시각적 혐오감을 주고 침출수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내장 운반과정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하며

- 축산물가공업체 및 유지처리업체 주변에 설치된 침출수받이(그레이팅) 수량 부족 및 설치면적 협소로 물청소 작업시 빗물 일부가 도로변에 유출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동물성 유지 수집·운반 과정에서 대형 집게차 이용에 따른 조작실수 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등 유지류 등 처리과정 개선을 통한 주민 숙원을 해결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개선을 통해 고객·상인·구민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편의성을 높인 시장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 배출업체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안 제7조에서 부서별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한 것은 주민-상인-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마장축산물시장 환경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침출수 저감, 축산물 및 유지류 등의 배출·보관·수집·운반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마장축산물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조치임
- 또한, 안 제12조의 시장 및 주변 일대의 환경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유지류 등 배출 및 수집·운반, 반입제한, 배출용 봉투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어 유통 과정을 새롭게 정립하고 현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 유지류 등 수거·운반차량이 마장역 인근 사설 계근소를 이용하여 학교 통학로, 아파트 주변으로 동선이 노출되어 안전상의 문제 및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안 제21조에서 구청장이 무게측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 종합 검토의견

- 마장축산물시장은 해방직후 우시장을 시작으로 1965년 민영화에 따라 도축전문업체 운영과 함께 주변에 점포밀집으로 형성된 유서 깊은 축산물시장으로 서울에는 마장동, 가락동, 독선동에 있지만 마장축산물시장은 전통있는 유일한 대규모 시장임과 동시에, 시장 인접지역 주민들로부터 각종 불편민원이 발생하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시장주변 환경개선이 주요 현안사업이며 현재 마장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하여 마장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으로 시장과 주거 환경개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축산물 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제정 되는 조례<sup>1)</sup>로 구청장과 업체 등에 환경개선을 위한 책무를 부여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장축산물시장 및 인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제정 후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물 환경개선', '시장 환경개선', '축산물시장' 검색결과 해당 자치법규 없음

## < 관계법규 >

### 붙임 1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3. 자신의 처리시설에서 처리가 어렵거나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지 말 것
4.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2항·제3항,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에 따른 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폐기물 처리 계약 시 계약서 작성·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붙임 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축산물”이란 식육·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

**붙임 3****「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